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김광성 의원)

의안 번호	307
----------	-----

발의연월일: 2024년 9월 2일

발 의 자: 김광성 의원

찬 성 자: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의원

1. 제안이유

- 23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약 22%가 논밭두렁 태우기·영농부산물 소각이 원인이었으며, 20년도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을 밭에서 모아서 소각한다는 비율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본 조례는 영농부산물 파쇄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지원을 통하여 농업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처리 계획(안 제4조)
- 나. 지원사업(안 제5조)
- 다. 파쇄지원단 운영 등(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첨부)
- 다. 입법예고: 2024. 8. 6. ~ 2024. 8. 27.(21일간) 의견 없음.
-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2024. 7. 17. ~ 2024. 7. 30.(14일간), 아래표 참조.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기술지원과) 검토 의견 제출

조례안(의회안)	검토안(기술지원과)	사유	의회 의견
<p>제4조(안전처리 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파쇄지원단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조(안전처리 계획) 군수는</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파쇄지원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현재 영농부산물의 병충해 유무를 확인 수 없어 다원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많음(병해충 확산등)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은 삭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 모두 수용</p> <p><u>제4조제4호.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삭제</u></p> <p><u>제5조제2호. 영농부산물 퇴비화사업 삭제</u></p> <p>○ 제4조와 제5조 조문 수정에 따라 <u>제1조와 제3조 조문 수정</u></p> <p>[기존 안] 제1조(목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쇄지원단 운영 2. 영농부산물 퇴비화 사업 3. 농업경영체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5조(지원사업) 군수는</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쇄지원단 운영 2. 농업경영체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병해충이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사용한 퇴비의 경우 오히려 병해충 방제가 아닌 확산이 우려됨으로 영농부산물 퇴비화 사업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현재 영농부산물 파쇄에 따른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 작업전 파쇄기를 소독하고 작업을 시행중임.)</p>	<p><u>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변경 안] 제1조(목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기존 안] 제3조(군수의 책무)-- 산불예방 및 <u>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u> --</p> <p>[변경 안] 제3조(군수의 책무)--- 산불예방 및 <u>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u> ---</p>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처리 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파쇄지원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농업경영체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파쇄지원단은 산림연접지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라.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사. 자연보호활동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지원사업 및 파쇄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유류비등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및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나. 추계 결과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 (천원)	비고
합계		105,130	국비 42,052 군비 63,078
인건비	파쇄운영지원단 보수 2,300천원×6명×5개월 (23년최저임금적용 9,620원×8시간×1개월)	69,000	국비 27,600 군비 41,400
일반운영비	유류비 및 기타 임대비(차량등)	31,120	국비 12,448 군비 18,672
	-유류비 1,600원×22L/일×파쇄기4대×5개월	21,120	
	-기타임대비(차량등) 1,000천원×2대×5개월	10,000	
	안전용품등 잡비 167천원×6명×5개월	5,010	국비 2,004 군비 3,006

다. 재원조달 방안

-국비 보조 및 자체재원(2024년 당초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장 윤병구
연락처	(033) 330 - 130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05,130	105,130	105,130	105,130	105,130	525,650
파쇄지원단 인건비		69,000	69,000	69,000	69,000	69,000	345,000
유류비 및 기타 임대비(차량등)		31,120	31,120	31,120	31,120	31,120	155,600
안전용품등 잡비		5,010	5,010	5,010	5,010	5,010	25,050
재원 조달		105,130	105,130	105,130	105,130	105,130	525,650
의존 재원	소 계	42,052	42,052	42,052	42,052	42,052	210,260
	보조금	42,052	42,052	42,052	42,052	42,052	210,26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3,078	63,078	63,078	63,078	63,078	315,39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63,078	63,078	63,078	63,078	63,078	315,39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